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 안 번 호 18619

제안연월일: 2016. 3.

제 안 자 : 안전행정위원장

1. 제안경위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6. 2. 28.)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개정된 「공직선거법」(2015. 6. 19.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20대국회의원선거는 물론, 향후에도 국회의원지역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 시한인 2015년 12월 31일이 경과되어 국회의원지역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 상태인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지역구 부재라는 비정상적 사태를 해소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 나.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함(안 제25조 제1항).
- 다.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인구로 하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5년 10월 31일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함 (안 제25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 라.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하되,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
- 마.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5조제2항).

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지연에 따라 필요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안심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및 예비후보자의 등록·홍보물 발송·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함(안 별표 1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國會議員地域選擧區"를 "국회의원지역건"라 한다)"로 한다.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각각 "국회의원지역구" 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10항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각각 "국회의원지역구"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각각 "국회의원지역구"로 한다.

제2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획정한다.
-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2015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제3조(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회의원지역구(이하 "종전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이 법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지연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 제4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일후 10일까지 사퇴하거나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예비후보자에게는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2016 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는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②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일 이

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7조의8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이 법 시행일 후 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 ②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국회의원지역구 중 입후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 제7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 이 법 시행 전에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경우 그 수량은 이 법 시행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에 포함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 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그 국회의원지역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 범위에서만 발송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거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 선임 신고를 한 경우 이 법 시행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②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로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시·군이 둘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 제10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 따른 전송횟수에 포함한다.
 - ②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 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 따른 전송횟수에 포함 한다.
- 제11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국회의원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 ②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 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 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지역구: 253)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서울특별시(지역구 : 49)
종 로 구 선 거 구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
중구성동구을선거구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중구 일원
용산구선거구	용산구 일원
광진구갑선거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광진구을선거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자양제4동, 화양동
동대문구갑선거구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을선거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중 랑 구 갑 선 거 구	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3·8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면목제7동, 상봉제2동, 망우제3동
중 랑 구 을 선 거 구	상봉제1동, 중화제1동, 중화제2동, 묵제1동, 묵제2동, 망우본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성북구갑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성북구을선거구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동
강 북 구 갑 선 거 구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1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을선거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제3동
도 봉 구 갑 선 거 구	쌍문1동, 쌍문3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

도봉구을선거구	쌍문2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도봉1동, 도봉2동
노 원 구 갑 선 거 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노 원 구 을 선 거 구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6·7동
노 원 구 병 선 거 구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은평구갑선거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역촌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을선거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서대문구갑선거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서대문구을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마포구갑선거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마포구을선거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양 천 구 갑 선 거 구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양 천 구 을 선 거 구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정4동
강서구갑선거구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우장산동
강서구을선거구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병선거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
구 로 구 갑 선 거 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구 로 구 을 선 거 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5동, 가리봉동
금 천 구 선 거 구	금천구 일원
영등포구갑선거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신길제3동

부산진구을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가야제1동, 가야제2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동 래 구 선 거 구	동래구 일원		
남 구 갑 선 거 구	대연제1동, 대연제3동,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남 구 을 선 거 구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동		
북구강서구갑선거구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북구강서구을선거구	북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강서구 일원		
해운대구갑선거구	우제1동, 우제2동, 우제3동, 중제1동,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해운대구을선거구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사하구갑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사하구을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금정구선거구	금정구 일원		
연 제 구 선 거 구	연제구 일원		
수 영 구 선 거 구	수영구 일원		
사 상 구 선 거 구	사상구 일원		
기 장 군 선 거 구	기장군 일원		
	대구광역시(지역구 : 12)		
중구남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 일원		
동 구 갑 선 거 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동구을 선거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공산동		
서 구 선 거 구	서구 일원		
북 구 갑 선 거 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동,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노원동		

북 구 을 선 거 구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수 성 구 갑 선 거 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수 성 구 을 선 거 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달서구갑선거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달 서 구 을 선 거 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달서구병선거구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달 성 군 선 거 구	달성군 일원
	인천광역시(지역구 : 13)
중구동구강화군 옹 진 군 선 거 구	중구 일원, 동구 일원, 강화군 일원, 옹진군 일원
남 구 갑 선 거 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남 구 을 선 거 구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갑선거구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연 수 구 을 선 거 구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남동구갑선거구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남 동 구 을 선 거 구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부 평 구 갑 선 거 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3동, 산곡4동, 부개1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부 평 구 을 선 거 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계양구갑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구을선거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서 구 갑 선 거 구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 구 을 선 거 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검단5동	
	광주광역시(지역구 : 8)	
동구남구갑선거구	남구 봉선1동, 봉선2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동구남구을선거구	남구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동구 일원	
서 구 갑 선 거 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 화정2동, 동천동	
서 구 을 선 거 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북 구 갑 선 거 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오치1동, 오치2동, 석곡동	
북 구 을 선 거 구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양산동	
광산구갑선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2동, 운남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광산구을선거구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대전광역시(지역구 : 7)	
동 구 선 거 구	동구 일원	
중 구 선 거 구	중구 일원	
서 구 갑 선 거 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서 구 을 선 거 구	용문동, 탄방동,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유성구갑선거구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원신흥동	
유성구을선거구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대덕구선거구	대덕구 일원	
울산광역시(지역구 : 6)		
중 구 선 거 구	중구 일원	
남 구 갑 선 거 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남 구 을 선 거 구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동 구 선 거 구	동구 일원
북 구 선 거 구	북구 일원
울 주 군 선 거 구	울주군 일원
	세종특별자치시(지역구 : 1)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선 거 구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경기도(지역구 : 60)
수 원 시 갑 선 거 구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수 원 시 을 선 거 구	율천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수 원 시 병 선 거 구	수원시 팔달구 일원
수 원 시 정 선 거 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1동, 광교1동, 광교2동
수 원 시 무 선 거 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영통2동, 태장동
성남시수정구선거구	성남시 수정구 일원
성남시중원구선거구	성남시 중원구 일원
성남시분당구갑 선 거 구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성남시분당구을 선 거 구	분당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정자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1동, 구미동
의정부시갑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의정부시을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안양시만안구선거구	안양시 만안구 일원
안 양 시 동 안 구 갑 선 거 구	
안 양 시 동 안 구 을 선 거 구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부 천 시 원 미 구 갑 선 거 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부 천 시 원 미 구 을 선 거 구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천시소사구선거구	부천시 소사구 일원
부천시오정구선거구	부천시 오정구 일원
광명시갑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4동
광명시을선거구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평택시갑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세교동
평 택 시 을 선 거 구	팽성읍, 안중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읍,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동 두 천 시 연 천 군 선 거 구	동두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안 산 시 상 록 구 갑 선 거 구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 산 시 상 록 구 을 선 거 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 산 시 단 원 구 갑 선 거 구	와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안 산 시 단 원 구 을 선 거 구	고잔1동, 고잔2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
고양시갑선거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식사동
고 양 시 을 선 거 구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병선거구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일산2동
고양시정선거구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의왕시과천시선거구	의왕시 일원, 과천시 일원

구리시선거구	구리시 일원
남양주시갑선거구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남양주시을선거구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남양주시병선거구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퇴계원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오 산 시 선 거 구	오산시 일원
시 흥 시 갑 선 거 구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
시 흥 시 을 선 거 구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군 포 시 갑 선 거 구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군 포 시 을 선 거 구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하남시선거구	하남시 일원
용인시갑선거구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용인시을선거구	신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상하동
용인시병선거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복동
용인시정선거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 보정동, 죽전1동, 죽전2동
파주시갑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파주시을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이천시선거구	이천시 일원
안 성 시 선 거 구	안성시 일원
김 포 시 갑 선 거 구	고촌읍,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김 포 시 을 선 거 구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2동, 구래동, 운양동
화성시갑선거구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화성시을선거구	동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화성시병선거구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광주시갑선거구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광주시을선거구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양 주 시 선 거 구	양주시 익원
포천시가평군선거구	포천시 일원, 가평군 일원
여주시양평군선거구	여주시 일원, 양평군 일원
	강원도(지역구 : 8)
춘 천 시 선 거 구	춘천시 일원
원 주 시 갑 선 거 구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무실동
원 주 시 을 선 거 구	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강 릉 시 선 거 구	강릉시 일원
동 해 시 삼 척 시 선 거 구	동해시 일원, 삼척시 일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 평창군정선군선거구	태백시 일원, 횡성군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정선군 일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선 거 구	속초시 일원, 고성군 일원, 양양군 일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선거구	홍천군 일원,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일원
	충청북도(지역구 : 8)
청주시상당구선거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청주시서원구선거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청주시흥덕구선거구	청주시 흥덕구 일원
청주시청원구선거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충 주 시 선 거 구	충주시 일원
제천시단양군선거구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보은군옥천군영동군 괴 산 군 선 거 구	보은군 일원, 옥천군 일원, 영동군 일원, 괴산군 일원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선 거 구	증평군 일원, 진천군 일원, 음성군 일원
충청남도(지역구 : 11)	

천 안 시 갑 선 거 구 명취읍, 복면, 성남면, 수선면, 병천면, 동면, 증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선안동, 성청1동, 성청2동 천 안 시 용 선 거 구 생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천 안 시 명 선 거 구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청룡동, 광용1동, 광용2동, 광용3동 장주시부여균청양균			
전 안시 병 선 거 구 공세면, 광덕면, 신방동, 청룡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공주시부여군정양군 선 거 구 보령시 일원, 부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보령시서천군신거구 보령시 일원, 서천군 일원 아산시 집 선 거 구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3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이산시 을 선 거 구 영치음, 배방음,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문포면, 영인면, 인주면서산시태안군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논산시계룡시급산군 건 거 구 당진시 일원, 제동시 일원, 급산군 일원 장려분교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전라북도(지역구:10) 전 주 시 갑 선 거 구 당진시 일원 중앙등, 풍남동, 노송동, 원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선주시을 선 거 구 성본동, 산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3동, 효자4동 전우시 병신 거 구 군산시 일원 학원동, 수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혼동, 동산동 간사 선 거 구 군산시 일원 학원음,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응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당면, 양상등, 평화동, 남충동, 보형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상산명, 양등2동, 어양동, 필봉동, 삼성동 정음시고창군선거구 정음시 일원, 고창군 인원	천 안 시 갑 선 거 구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선 거 구 보령시 일원, 부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기 구 보령시 원원, 부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이 산 시 갑 선 거 구 선장면, 도교면, 신장면, 온양1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이 산 시 을 선 거 구 염치유, 배방유, 송악면, 당정면, 음봉면, 문포면, 영인면, 인주면 서산시배안군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 거 구 당진시 일원, 제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형성군예산군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청라복도(지역구:10) 중앙동, 풍남동, 노송등, 원산동, 동서하동, 서서하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전 주 시 갑 선 거 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등, 안산동, 동서하동, 서서하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전 주 시 별 선 거 구 전부동, 인후1동, 산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인후1동, 인후2동, 로성동, 송천1동, 공천2동, 골본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군 산 시 선 거 구 군산시 일원 합열음, 오산면, 황등면, 합라면, 응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당신시 을 선 거 구 당산면, 망성면, 이산면, 금마면, 왕궁면, 순보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이양동, 괄봉동, 삼성동	천안시을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선 거 구 당주시 일원, 무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나 전시 집 선 거 구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아 산 시 읍 선 거 구 염치료, 배방요,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등보면, 영인면, 인주면 서산시태안군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논산시계룡시급산군 거 구 당진시 일원, 계용시 일원, 급산군 일원 장리로예산군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전라북도(지역구: 10) 전 주 시 집 선 거 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화동, 서서화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전 주 시 을 선 거 구 경상으로, 암산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3동, 효자4동 전 주 시 병 선 거 구 전부동, 인후1동, 안후2동, 급진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군 산 시 선 거 구 군산시 일원 익 산 시 집 선 거 구 항선면, 황등면, 함라면, 응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충동, 모현동, 송학동, 신통, 인화동, 마동 인 산 시 읍 선 거 구 당산면, 망성면, 역산면, 금마면, 왕국면, 충모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이양동, 필봉동, 삼성동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점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천안시병선거구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청룡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아 산 시 갑 선 거 구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아 산 시 을 선 거 구 염지유,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서산시대안군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 거 구 당진시 일원, 계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당진 시 선 거 구 당진시 일원 전라북도(지역구:10) 전 주 시 갑 선 거 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원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전 주 시 갑 선 거 구 전시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 주 시 병 선 거 구 전부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압1동, 금압2동, 괄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포촌동, 동산동 고 산 시 선 거 구 한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용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의 산 시 을 선 거 구 당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순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공주시 일원, 부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아 산 시 급 선 거 구 연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서산시태안군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 거 구 당진시 일원 제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당 진 시 선 거 구 당진시 일원 제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전라북도(지역구:10) 전 주 시 갑 선 거 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전 주 시 을 선 거 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 주 시 병 선 거 구 전사 의원 경우,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간사 일원 함열읍, 오산면, 황동면, 함라면, 응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충동, 모현동, 소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방산명, 망성면, 영상명, 용상면, 용양명, 평화동, 남충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남산명,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점읍시고창군선거구 점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 거 구	보령시서천군선거구	보령시 일원, 서천군 일원	
서산시태안군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 거 구 당진시 일원 평성군예산군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전라북도(지역구:10) 전 주 시 갑 선 거 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전 주 시 읍 선 거 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 주 시 병 선 거 구 전복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급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군 산 시 선 거 구 군산시 일원 익 산 시 갑 선 거 구 합열읍, 오산면, 황등면, 합라면, 왕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오현동, 연황동, 마동 익 산 시 을 선 거 구 당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촌포면, 삼기면, 동산동, 경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 거 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아 산 시 갑 선 거 구		
는산시계룡시금산군 선 거 구 는산시 일원, 계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당 진 시 선 거 구 당진시 일원 홍성군예산군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전라북도(지역구:10) 전 주 시 갑 선 거 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전 주 시 을 선 거 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 주 시 병 선 거 구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괄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군 산 시 선 거 구 군산시 일원 익 산 시 갑 선 거 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응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익 산 시 을 선 거 구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 거 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아 산 시 을 선 거 구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선 거 구 본산시 일원, 계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당 진 시 선 거 구 당진시 일원 정라북도(지역구 : 10) 전 주 시 갑 선 거 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전 주 시 을 선 거 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 주 시 병 선 거 구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군 산 시 선 거 구 군산시 일원 의 산 시 갑 선 거 구 항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응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의 산 시 을 선 거 구 당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 기 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서산시태안군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홍성군예산군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전라북도(지역구: 10) 전 주 시 갑 선 거 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전 주 시 을 선 거 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 주 시 병 선 거 구 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괄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군 산 시 선 거 구 군산시 일원 의 산 시 갑 선 거 구 합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응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의 산 시 을 선 거 구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괄봉동, 삼성동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 거 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논산시 일원, 계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전라북도(지역구: 10) 전 주 시 갑 선 거 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전 주 시 을 선 거 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 주 시 병 선 거 구 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괄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군 산 시 선 거 구 군산시 일원 의 산 시 갑 선 거 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의 산 시 을 선 거 구 당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이양동, 괄봉동, 삼성동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 거 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당진시선거구	당진시 일원	
전 주 시 갑 선 거 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전 주 시 을 선 거 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 주 시 병 선 거 구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군 산 시 선 거 구 군산시 일원 의 산 시 갑 선 거 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합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의 산 시 을 선 거 구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 거 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홍성군예산군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전 두시 답선 거 구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전 주 시 을 선 거 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 주 시 병 선 거 구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괄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군 산 시 선 거 구 군산시 일원 약 산 시 갑 선 거 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응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약 산 시 을 선 거 구 당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괄봉동, 삼성동 장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 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전라북도(지역구 : 10)		
전 구 시 을 선 거 구	전 주 시 갑 선 거 구		
전 우시 명 선 거 구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군 산 시 선 거 구 군산시 일원 익 산 시 갑 선 거 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응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익 산 시 을 선 거 구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 거 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전 주 시 을 선 거 구		
의 산 시 갑 선 거 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의 산 시 을 선 거 구 당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점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 거 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전 주 시 병 선 거 구		
역 산시 샵 선 거 구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역 산 시 을 선 거 구 당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점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 거 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군 산 시 선 거 구	군산시 일원	
역 산 시 을 선 거 구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 거 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익산시갑선거구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 거 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익산시을선거구		
선 거 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장군 일원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김제시부안군선거구 김제시 일원 부안군 일원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р 4 / 1 с с с / 1 р 4 / е с, 7 с с е с	김제시부안군선거구	김제시 일원, 부안군 일원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장 수 군 선 거 구	완주군 일원,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 장수군 일원	
전라남도(지역구 : 10)		
목 포 시 선 거 구	목포시 일원	
여 수 시 갑 선 거 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여 수 시 을 선 거 구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순 천 시 선 거 구	순천시 일원	
나주시화순군선거구	나주시 일원, 화순군 일원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 거 구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담양군함평군영광군 장 성 군 선 거 구	담양군 일원, 함평군 일원, 영광군 일원, 장성군 일원	
고흥군보성군장흥군 강 진 군 선 거 구	고흥군 일원, 보성군 일원, 장흥군 일원, 강진군 일원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 거 구	해남군 일원, 완도군 일원, 진도군 일원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 거 구	영암군 일원, 무안군 일원, 신안군 일원	
	경상북도(지역구 : 13)	
포항시북구선거구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시남구울릉군 선 거 구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 주 시 선 거 구	경주시 일원	
김 천 시 선 거 구	김천시 일원	
안 동 시 선 거 구	안동시 일원	
구미시갑선거구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구 미 시 을 선 거 구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선 거 구	영주시 일원,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영천시청도군선거구	영천시 일원, 청도군 일원		
상주시군위군의성군 청 송 군 선 거 구	상주시 일원, 군위군 일원, 의성군 일원, 청송군 일원		
경 산 시 선 거 구	경산시 일원		
영양군영덕군봉화군 울 진 군 선 거 구	영양군 일원, 영덕군 일원, 봉화군 일원, 울진군 일원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 거 구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칠곡군 일원		
경상남도(지역구 : 16)			
창원시의창구선거구	창원시 의창구 일원		
창원시성산구선거구	창원시 성산구 일원		
창원시마산합포구 선 거 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		
창원시마산회원구 선 거 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원		
창원시진해구선거구	창원시 진해구 일원		
진 주 시 갑 선 거 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진 주 시 을 선 거 구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초장동		
통영시고성군선거구	통영시 일원, 고성군 일원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선 거 구	사천시 일원, 남해군 일원, 하동군 일원		
김 해 시 갑 선 거 구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 해 시 을 선 거 구	주촌면, 진례면,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밀양시의령군함안군 창 녕 군 선 거 구	밀양시 일원,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창녕군 일원		
거 제 시 선 거 구	거제시 일원		

양산시갑선거구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양산시을선거구	동면, 양주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산청군함양군거창군 합 천 군 선 거 구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합천군 일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구 : 3)		
제주시갑선거구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 주 시 을 선 거 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귀포시선거구	서귀포시 일원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第21條(國會의 議員定數) ①國會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 의 議員定數는 地域區國會議員 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과 比例代表國會議員을 합하여 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300명으로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 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는 1인으로 한다. ②하나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 ②----국회의원지역선거구 에서 選出할 國會議員의 定數 (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 는 1人으로 한다. 다)----.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 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 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 -----국회의원지역구-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 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 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 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 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 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 다.

② ~ ④ (생 략)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기회)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 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 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 ⑨ (생 략)

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 ④ (생 략)

제24조의2(<u>국회의원지역선거구</u>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회) ① <u>국회의원지역구</u>
	<u>국회의원</u>
	<u>지역구</u>
	② ~ ⑨ (현행과 같음)
	그 취 이 이 기 어 그
	<u>국회의원지역구</u>
	 ① ~ ⑭ (현행과 같음)
세	24조의2(<u>국회의원지역구</u> 확정)
''	①국회의원지역구

<u>선거구</u>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 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 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 (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 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 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 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 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 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 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 구할 수 있다.
- ④ (생 략)
- ⑤ 선거구법률안 중 <u>국회의원</u>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 에 한해서는 「국회법」 제86 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u>.</u>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회의원지
역구
④ (현행과 같음)
⑤국회의원
<u>지역구</u>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 에서 제외하다.

⑥ (생략)

第25條(國會議員地域區의 劃定)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國會議員地域選擧區(이하 " 國會議員地域區"라 한다)는 市 ・道의 管轄區域안에서 人口・ 行政區域・地勢・交通 기타 조| 건을 고려하여 이를 劃定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分割 하여 다른 國會議員地域區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제2 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 1조(국회의 의원정수)제1항 본 문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 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⑥ (현행과 같음)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 역 · 지리적 여건 · 교통 ·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 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 재 「주민등록법」__제7조제1 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 2.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 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 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 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 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 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

	그리 그저차 스 어느 거ㅇ세
	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인접한 자치구ㆍ시ㆍ군
	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u>수 있다.</u>
<u><신 설></u>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u>한다.</u>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